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6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김미애 · 김선교  
김기현 · 서명옥 · 이달희  
최보윤 · 김상훈 · 김대식  
김성원 · 정점식 · 임종득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.

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.

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「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「수소도시 조성 및

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·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1호(20)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종배·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」(의안번호 제2207605호)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52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에 (2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20) 「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·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「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·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